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 ○ 성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완료에 따라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·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,
 ○ 자치법규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 정비

3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등 (별첨)
 나. 예산조치 : 53,880천원 정도
 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 라.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.
 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. (2015. 7. 2 ~ 7. 22)

4. 주요내용
 ○ 제명 변경
 -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→ 성주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
 ○ 공설시장 개수 및 위치 변경(안 제2조, 별표1)
 - 5개 → 3개, 현재 주소 반영
 · 성주·용암·가천·벽진·초전시장→성주·용암·벽진시장
 ○ 사용허가(안 제4조)
 - 방　　법 : 신청 → 신청자 중 공개추첨 또는 수의계약
 - 사용기간 : 2년 → 3년
 ○ 사용료 요율·납부방법 변경, 보증금 규정 신설(안 제8조, 안 제9조, 별표2)
 - 사용료의 현실화(별표2 참고)
 - 납부방법 : 월납 → 「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2조의2 준용
 - 사용료 분할납부 시 보증금 납부 규정 신설
 ○ 규제개선(안 제11조, 안 제16조)
 -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반환하지 않는다 → 일할 계산하여 환급
 - 손해배상금 군수가 정하도록 한 조항삭제 → 통상손해 한도

5. 검토의견

○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주시장 현대화사업 완료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

○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
- 조례명을 당초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에서 성주군 공설 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하고

- 안 제2조 별표1에서 당초 5개이던 공설시장을 2005년과 2009년도에 각각 용도 폐지된 가천시장과 초전시장을 삭제하여 성주시장 용암시장, 벽진시장 3곳으로 공설시장 개수를 변경하였으며,

- 안 제4조 시장 사용허가 방법에 있어서 단순 신청에 따른 허가에서 신청에 따라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지정하되 공설시장의 활성화 계획 및 점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, 사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.

- 안 제8조에서 사용료 요율은 조례 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설시장 점포·장옥은 토지의 경우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%,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의 2%로 변경하여 이전 조례에서 장옥의 경우 상설·정기시장 동일하게 평당 개별공시지가의 5%(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1.5%)와 평당 건물시가표준액의 5%(평방미터당 건물 시가 표준액의 1.5%)로 산출하던 것을 상향 조정하였고 정기시장 장옥 사용료는 토지의 경우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2%,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의 1%로 변경하여 상설시장 사용료에 비해 1%씩 낮게 책정하였습니다. 납부방법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를 준용하여 월납에서 연납으로 하고, 100만원 초과시 3%이자를 붙여 2회 분납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

- 안 제9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시 50%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또한, 안 제11조에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, 안 제16조에서 설비 훼손 또는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군수가 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민법상 통상 손해의 한도에서 배상하도록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규제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.
- 전체적으로 법리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,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

- 공설시장 사용료 요율 변경 등에서도 상위법령과 영천시, 청송군 등 타시군의 공설시장 현황을 검토하여 적정선에서 현실화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규제개선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